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pc.go.kr>

제1143호 2022. 12. 16.(금)

고 시

- 평창군 고시 제2022-194호 2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차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공 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838호 7
(2023년 평생학습매니저 채용 공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850호 13
(횡계리 전원마을지구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공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862호 15
(2023년 평창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881호 17
(2022년 제1회 평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평창군 미탄면 공고 제2022-19호 3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독촉장 겸 영수증)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발행 기획실 (☎033-330-2041)

고 시

평창군 고시 제2022-194호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차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평창군 고시 제2020-68호(2020.04.17.)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차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평 창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평창올림픽법」에 따라 수립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예정부지 제척 및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차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변경

나. 위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55-1 일원 (차항 지구단위계획구역)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14,652	감) 12,939	201,713	100.0	-
계획관리지역	214,652	감) 12,939	201,713		

○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대관령면 차항리 55-1번지 일원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201,713	200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으로 용도지역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차항	주거형	대관령면 차항리 55-1번지 일원	214,652	감) 12,939	201,713	평창군고시 제1999-28호 (1998.09.19)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m ²)	변 경 사 유
변경	①	대관령면 차항리 55-1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변경 - 214,652m²→201,713m² 감) 12,939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예정부지 제척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변경)

1.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기정	8	1,893	19,714	2	737	12,512	1	27	255	5	1,129	6,948
	변경	8	2,162	29,849	3	1,047	22,954	-	-	-	5	1,115	6,895
중로	기정	1	317	8,171	1	317	8,171	-	-	-	-	-	-
	변경	1	317	12,507	1	317	12,507	-	-	-	-	-	-
소로	기정	7	1,576	11,543	1	420	4,341	1	27	255	5	1,129	6,947
	변경	7	1,845	17,342	2	730	10,447	-	-	-	5	1,115	6,895

(2)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주 간선	317	차항리584-1도	차항리585도	일반 도로		평창군고시 제1998-280호 (1998.09.19.)	
변경	중로	1	1	20	주 간선	317	차항리584-1도	차항리585도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3	10.2	보조 간선	431	중로1-1 차항리30-5대	차항리25-3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2	10	보조 간선	420	중로1-1 차항리584도	차항리25-3도	일반 도로		평창군고시 제1998-280호 (1998.09.19.)	
변경	소로	1	2	10	보조 간선	299	중로1-1 차항리32-4도	소로1-3 차항리산173-2도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27	소로1-2 차항리 27-1전	소로3-15 차항리27-1전	일반 도로		평창군고시 제1998-280호 (1998.09.19.)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34	소로3-3 차항리582천	차항리61-3전	일반 도로		평창군고시 제1998-280호 (1998.09.19.)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561	중로1-1 차항리43-1전	차항리64-3전	일반 도로		평창군고시 제1998-280호 (1998.09.19.)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556	중로1-1 차항리43-7전	차항리64-3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368	중로1-1 차항리585도	차항리55-1대	일반 도로		평창군고시 제1998-280호 (1998.09.19.)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362	중로1-1 차항리35-2대	차항리55-1대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0	4	국지 도로	44	중로1-1 차항리33-20도	차항리33-36전	일반 도로		평창군고시 제1998-280호 (1998.09.19.)	
변경	소로	3	20	4	국지 도로	41	중로1-1 차항리33-55대	차항리33-36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22	소로1-2 차항리582-4천	소로3-7 차항리582-4천	일반 도로		평창군고시 제2015-24호 (2015.03.03)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중로1-1	• 선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로1-1호선에 기 지정된 도로구역을 반영하여 변경
-	소로1-3	• 노선신설 • 연장:431m, 폭:10.2m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노선신설
소로1-2	소로1-2	• 선형 및 연장변경 • 연장:420m→299m, 감)121m	• 소로1-3호선 신설에 따른 선형 및 연장변경
소로2-1	-	• 노선폐지 • 연장:27m, 폭원:8m	• 소로1-3호선 신설에 따라 활용도 및 개설 가능성이 낮은 노선 폐지
소로3-3	소로3-3	• 선형 및 연장변경 • 연장:561m→556m, 감)5m	• 지적현황 및 중로1-1호선 선형변경 반영에 따른 선형 및 연장변경
소로3-7	소로3-7	• 연장변경 • 연장:368m→362m, 감)6m	• 중로1-1호선 선형변경 반영에 따른 연장변경
소로3-20	소로3-20	• 연장변경 • 연장:44m→41m, 감)3m	• 중로1-1호선 선형변경 반영에 따른 연장변경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도암 초등학교	초등학교	대관령면 차항리 55-1번지 일원	11,732	-	11,732	평창군고시 제1998-280호 (1998.09.19.)	

2.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도면 번호	구분	위 치	가 구			구성비(%)	비고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214,652	감)12,939	201,713	100.0	
A	주거용지	-	114,700	감)15,868	98,832	49.0	
B	상업용지	-	14,819	감)4,540	10,279	5.1	
C	녹지용지	-	53,687	감)2,666	51,021	25.3	
D	공공시설용지	-	31,446	증)10,135	41,581	20.6	

○ 변경사유서 : 기반시설(도로) 변경에 따른 변경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토지이용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주거용지	용도	지정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호의 가목의 아파트는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상업용지	용도	지정용도	■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2호의 가목의 아파트는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녹지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농·어업용의 가건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공공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공공청사, 광장 등의 공익목적의 도시기반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평창군청 도시과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 고

평창군 공고 제2022-1838호

2023년 평생학습매니저 채용 공고

2023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창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라 평생학습매니저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평 창 군 수

1. 모집현황

- 가. 모집구분: 평창군 평생학습매니저
- 나. 모집인원: 8명(읍·면 평생학습센터별 1명)
- 다. 활동기간: 2023. 1월 ~ 12월
- 라. 활동조건: 1일 4시간, 주 4회
 - 활동비: 60,000원(1일 4시간 기준) ※ 4대보험 포함
 - 교통비: 5,000원
- 마. 역 할
 - 1) 평생학습 프로그램 조사에 의한 개발 및 운영, 평가
 - 2) 학습자 관리(출석, 동아리 활동, 상담 등) 및 강사 섭외·관리
 -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 사진, 물품 등 관리 및 준비
 - 4) 평생학습센터 운영관련 보고

2. 신청자격

-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저촉되지 아니한 자
- 나.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주소를 평창군에 둔 거주자
- 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평창군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 수료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2) 평생학습매니저 활동 경력자

3. 신청서 접수

- 가. 공고기간: 2022. 12. 12.(월) ~ 12. 20.(화)
- 나. 접수기간: 2022. 12. 12.(월) ~ 12. 20.(화) 09:00 ~ 18:00
-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라. 접 수 처: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평생교육팀 (☎ 033-330-2026)

4. 제출서류

- 가.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 양식) 각 1부.
- 나. 자격증(수료증) 사본 1부.
- 다. 주민등록초본(현 주소지 및 전입일, 병역사항 기재분) 1부.
-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 제출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5. 심사방법

- 가. 선정방법: 평창군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 나. 심사일정
 - 1) 1차 서류심사: 2022. 12. 21.(수) ~ 12. 22.(목)
 - 2) 2차 면접심사: 2022. 12. 26.(월) ~ 12. 28.(수) 기간 중 1일
- 다.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22. 12. 30.(금), 개별통지

6.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가.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나.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유선 [인재육성과 평생교육팀(☎ 033-330-2026)]으로 신청
- 라.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7. 기타사항

- 가.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오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나. 서류심사과정 중 추가자료 요구 시,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다. 신청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심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 포함)에는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라.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인재육성과 평생교육팀(☎ 033-330-2026)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주요경력 등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평창군 평생학습매니저 채용

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목록

- 필수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평생학습센터 운영 중 활동사진 등을 촬영하여, 본인의 초상이 사진, 영상물에 기록될 경우, 향후 평창군 평생학습 홍보자료 등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다.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에 관한 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까지 5년 동안 보유·이용됩니다.

라.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 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의하셔야만 채용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2. 개인정보제공 동의사항

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 활동사진 등의 촬영, 본인의 초상이 사진·영상물에 기록되어 홍보자료 등에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동 의 동의안함 (해당 박스에 √표시)

2022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공 고

평창군 공고 제2022-1850호

횡계리 전원마을지구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공고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17-15번지에「농어촌정비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횡계리 전원마을지구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2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위 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17-15번지(전)
- 면 적: 2,298㎡ / 단독주택 신축(4동)
- 시 행 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11, *****
성명 - 양*모 외1인
- 사업기간: 2023. 1. ~ 2024. 12.

2. 사업목적: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독주택 신축하여 타지역 인
구유입과 마을주민과의 교류증대

3. 사 업 비: 금392,340,000원(금삼억구천이백삼십사만원)

4.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평창군청 건설과 기반시설팀 (☎ 033-330-2485)
- 열람기간: 2022. 12. 12. ~ 2022. 12. 26.(14일간)
- 의견제출: 열람기간 종료 후 5일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창군청 건설과 기반시설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평창군 공고 제2022-1862호

2023년 평창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의거 주민의 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평 창 군 수

1. 사업개요

사업지구	위치	필지수	면적(천m ²)
계	7개 지구	1,247	1,547
조동1지구	평창읍 조동리 109-1번지 일원	38	32
천동1지구	평창읍 천동리 176-1번지 일원	251	556
마지2지구	평창읍 마지리 570번지 일원	139	135
대화3지구	대화면 대화리 1143번지 일원	241	250
흥정2지구	봉평면 흥정리 190-1번지 일원	80	41
재산4지구	용평면 재산리 1413번지 일원	292	313
재산5지구	용평면 재산리 1522-1번지 일원	206	220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90일간

3. 사업시행자 : 평창군수

4. 사업기간 : 2023. 01 ~ 2024. 12(24개월)

5.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6.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평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33-330-2461, 2043, 2884

나. 팩스 : 033-330-2630

다. 방문, 우편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공 고

평창군 공고 제2022-1881호

평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4호

2022년도 제1회 평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강원도 평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평창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개요

분 야	임용등급	임용기간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처 (근무시간)
안전관리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2년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 	안전교통과 (주 35시간)
보건관리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2년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위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지도·조언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 	안전교통과 (주 35시간)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평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만20세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역·성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격요건 : 자격요건 및 경력요건 모두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구 분	자격요건	
안전관리 자 (8급 상당)	자 격 요 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 력 요 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보건관리 자 (8급 상당)	자 격 요 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경 력 요 건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4. 근무조건 및 보수액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해당사업이 계속되거나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 세부사항은 채용 후 근무부서와 협의
- 보수수준

채용분야	직 급	근무시간	연봉액	비 고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8급 상당)	주35시간	34,877천원	근무시간에 비례·책정
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8급 상당)	주35시간	34,877천원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 평가
 -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12. 26.(월) ~ 2022. 12. 28.(수)
 - * 접수시간은 09:00 ~ 18:00이며,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평창군청 행정과 행정팀(2층)
 -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행정과 행정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23. 1. 3.(화)
 - 면접시험 : 2023. 1. 6.(금)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1. 10.(화) 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
 - *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재공고 발생 시(서류심사 합격자가 선발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6·7급 상당 7,000원, 8·9급 상당 5,000원) : 평창군청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 * 우편접수 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 구입하여 동봉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자격증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 (해당자)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 실적 등)
 - *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요약 첨부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 신체검사 등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평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관련 사항 : 행정과 행정팀(☎ 033-330-2754)
 - 직무 관련 사항

임용분야	연락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행정과 노무관리팀(☎ 033-330-2239)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인적사항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비 고

제출서류 목록

목 록	제출여부
1. 제출서류 목록표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9.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0. 자격증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2.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표시하고, 위 순서대로 제출
(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응시원서

본인은 강원도 평창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평창군 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지방행정주사보, 지방행정서기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수입증지 : 아래 해당 금액의 강원도 평창군 수입증지를 구입(1층 민원토지과)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나, 다급) : 7천원, 8·9급(라, 마급) : 5천원
 - ※ 우편으로 접수 할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경력채용 이력서

1. 공통 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	--	----------	--	-----	--

2. 응시 자격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00기업(00팀)	20XX. X. X ~ 20XX. X. XX	대리	
	00상사(00과)	20XX. X. X ~ 20XX. X. XX	과장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학	20XX. X. X.	학사	
	00학	20XX. X. X.	석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성 명 : (인)

-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 ※ 경력은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경력만 기재
- ※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2022. . . 작 성 자 : (서명)

- ※ 분량은 A4 용지 2매 내외로 자필 또는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
- ※ 지원동기,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가치관, 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응시직위 :
- 성 명 :
- 생년월일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1)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2)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3)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가급적 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개인정보제공 · 이용 동의 안내 —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 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되며, 이후 공공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열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별도 제출 필요

성명: (서명) 생년월일:

경 력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근무일수	일	당시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명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해당부서근무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직급(위)	특이사항
~					
~					
~					
~					
~	※ 시간제 근무경력은 총 근무시간 기재 : 일 시간/주 시간/월 시간				
				담 당 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안전관리자	1명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 이행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직급별 역량) 평창군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관련 법령에 관한 해석 및 적용 능력 ○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개선조치 능력 ○ 산업안전보건 관련 쟁점에 대한 자료 분석 능력 ○ 산업안전보건법 수시 개정에 대한 신속한 적용 능력
-------------	--

관련분야 : 안전관리자

응시자격요건	자격기준	<p>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자
	경력기준	<p>아래의 경력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직무기술서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보건관리자	1명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위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지도·조언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 이행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직급별 역량) 평창군 실정에 맞는 보건관리 능력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관련 법령에 관한 해석 및 적용 능력 ○ 유해·위험요인 발견 및 개선조치 능력 ○ 산업안전보건 관련 쟁점에 대한 자료 분석 능력 ○ 산업안전보건법 수시 개정에 대한 신속한 적용 능력
-------------	--

관련분야 : 보건관리자

응시자 자격요 건	자 격 기 준	<p>아래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사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경 력 기 준	<p>아래의 경력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공 고

평창군 미탄면 공고 제2022-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4조 및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제80조 및「평창군 건축조례」제24조에 따라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독촉장 검 영수증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미 탄 면 장

- 1. 제 목 :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위반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독촉장 검 영수증
- 2. 근거법령
 -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평창군 건축조례」제24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 축 주	소 재 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김백*	강원도 미탄면 화동리 산48번지	무단증축	원상복구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2022.11.3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37, 한리아파트 113동 1301호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2. 12. 12. ~ 2022. 12. 27.(15일간)
-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6.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강원도 온라인 행정심판(<http://gw.simpan.go.kr>)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문의 : 평창군 미탄면사무소 건설환경팀(☎033-330-2694)